

가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의결주문

가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 「민법」 개정으로 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 친권의 일시 정지의 선고, 친권의 일부 제한의 선고 등에 관한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그 세부 절차를 규정하고, 가사소송규칙 제2조에 규정되었던 가정법원의 관장사항 일부가 가사소송법에 반영되었으므로 이를 정비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가사소송규칙」 제2조 제1항에 규정되었던 가정법원의 관장사항 일부가 개정된 「가사소송법」(법률 제11949호) 제2조 제1항에 동일하게 신설되었으므로 이를 삭제하고, 「민법」 개정(법률 제12777호)에 따라 「가사소송법」에 추가되지 않은 「민법」 제924조제3항에 따른 친권의 일시 정지 기간 연장 청구를 마류가사비송사건의 절차에 의하여 심리·재판하도록 함(안 제2조제1항 및 제2항)

- 「민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친권의 일시정지, 일부제한, 일시 정지에 대한 기간연장의 심판 또는 그 회복선고의 심판을 가족 관계등록부기록을 축적하여야 할 판결 등에 추가함(안 제5조제1항1의2호)
- 「민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 친권의 상실, 일시 정지, 일시 정지에 대한 기간 연장, 일부 제한 또는 그 실권회복선고 청구시 그 친권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청구하도록 함 (안 제101조)
- 「민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 친권의 일시 정지, 일시 정지에 대한 기간 연장, 일부 제한 또는 그 실권회복선고의 각 결정에 대하여 상대방 또는 「민법」 제925조에 규정한 자가 즉시항고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3조)

4. 가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붙임과 같음

5. 신·구조문대비표

붙임과 같음

가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가사소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5호부터 제13호까지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4호부터 제13호까지의 사건은 라류”를 “제4호의 사건은 마류”로 한다.

4. 「민법」 제924조제3항에 따른 친권의 일시 정지 기간 연장 청구

제5조제1항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 2. 친권의 일시 정지, 일부 제한, 일시 정지에 대한 기간연장의 심판 또는 그 실권 회복의 심판

제10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그 청구”를 “청구”로, “친권”을 “친권 또는 친권의 일부”로 한다.

① 「민법」 제92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 「민법」 제924조, 제924조의2, 제925조의 규정에 의한 친권의 상실, 일시 정지, 일시 정지에 대한 기간 연장, 일부 제한 및 법률행위 대리권과 재산 관리권의 상실 선고의 심판은 그 친권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제10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3조(즉시향고) 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 친권의 상실, 일시

정지, 일시 정지에 대한 기간 연장, 일부 제한 및 그 실권 회복의 선고 또는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의 상실 및 그 실권 회복의 선고 심판에 대하여는 상대방 또는 「민법」 제925조에 규정한 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전에 법원에 접수된 사건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 · 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가정법원의 관장사항) ① 가정법원은 법 제2조제1항 각호의 사항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도 이를 심리·재판한다.</p> <p>1. 미성년후견인의 순위확인</p> <p>2. 「민법」 제1014조의 규정에 의한 피인지자등의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청구</p> <p>3. 양친자관계존부확인</p> <p>4. 「민법」 제909조의2제5항에 따라 <u>친권자 또는 미성년후견인의 임무를 대행할 사람(이하 "임무대행자"라 한다)의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권한을 넘는 행위의 허가</u></p> <p>5. 「민법」 제867조에 따른 미성년자의 입양에 대한 허가</p> <p>6. 「민법」 제873조제2항에 따라 <u>준용되는 같은 법 제867조에 따른 피성년후견인이 입양을 하거나 양자가 되는 것에 대한 허가</u></p> <p>7. 「민법」 제871조제2항에 따른 <u>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u></p> <p>8. 「민법」 제906조제1항 단서에 따</p>	<p>제2조(가정법원의 관장사항) ① -- ----- ----- -----.</p> <p>1. (현행과 같음)</p> <p>2. (현행과 같음)</p> <p>3. (현행과 같음)</p> <p>4. 「민법」 제924조제3항에 따른 <u>친권의 일시 정지 기간 연장 청구</u></p> <p>5. 삭제</p> <p>6. 삭제</p> <p>7. 삭제</p> <p>8. 삭제</p>

른 양자의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의 파악 청구에 대한 허가

9. 「민법」 제909조의2제1항부터 제5
항까지(같은 법 제927조의2제1항
각 호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준용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친
권자의 지정, 미성년후견인의 선
임 및 임무대행자의 선임

10. 「민법」 제909조의2제6항에 따른
후견의 종료 및 친권자의 지정

11. 「민법」 제927조의2제2항에 따른
친권자의 지정

12. 「민법」 제931조제2항에 따른 후
견의 종료 및 친권자의 지정

13. 「민법」 제909조의2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954조에 따른
미성년자의 재산상황에 대한 조사
및 그 재산관리 등 임무대행자의
임무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
명령

② 제1항제1호·제3호의 사건은 법
및 이 규칙이 정한 가류 가사소송
사건의 절차에 의하여, 제2호의
사건은 다류 가사소송사건의 절차
에 의하여, 제4호부터 제13호까지
의 사건은 라류 가사비송사건의

9. 삭제

10. 삭제

11. 삭제

12. 삭제

13. 삭제

② -----

----- 제4호의 사건
은 마류 -----

절차에 의하여 심리·재판한다.

제5조(가족관계등록부기록을 촉탁하여야 할 판결등) ①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가족관계등록부기록을 촉탁하여야 할 판결 또는 심판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친권, 법률행위대리권, 재산관리권의 상실선고의 심판 또는 그 실권회복선고의 심판

<신 설>

2. 친권자의 지정과 변경의 판결 또는 심판

2의 2. 미성년후견의 종료 및 친권자의 지정의 심판

2의 3. 친권자·미성년후견인의 임무 대행자 선임의 심판

3. 미성년후견인·미성년후견감독인의 선임, 변경 또는 사임허가의 심판

4. 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친권자의 친권, 법률행위대리권, 재산관리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행사를 정지하거나 미성년후견인·미성

-----.

제5조(가족관계등록부기록을 촉탁하여야 할 판결등) ① -----

-----.

1. (현행과 같음)

1의 2. 친권의 일시 정지, 일부 제한, 일시 정지에 대한 기간연장의 심판 또는 그 실권 회복의 심판

2. (현행과 같음)

2의 2. (현행과 같음)

2의 3.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년후견감독인의 임무수행을 정지하는 재판과 그 대항자를 선임하는 재판

- ② 제1항제4호의 재판이 본안심판의 확정, 심판청구의 취하 기타의 사유로 효력을 상실하게 된 때에는 가정법원의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는 법 제9조의 예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촉탁하여야 한다.

제101조(상대방) ① 「민법」 제924조 및 「민법」 제925조의 규정에 의한 친권, 법률행위대리권, 재산관리권의 상실선고의 심판은 그 친권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 ② 「민법」 제926조의 규정에 의한 실권회복선고의 심판은, 그 청구 당시 친권, 법률행위대리권, 재산관리권을 행사하거나 이를 대항

- ② (현행과 같음)

제101조(상대방) ① 「민법」 제92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 「민법」 제924조, 제924조의2, 제925조의 규정에 의한 친권의 상실, 일시정지, 일시 정지에 대한 기간 연장, 일부 제한 및 법률행위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의 상실 선고의 심판은 그 친권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 ② 「민법」 제926조의 규정에 의한 실권회복선고의 심판은, 청구 당시 친권 또는 친권의 일부, 법률행위대리권, 재산관리권을 행사

하고 있는 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제103조(즉시항고) 친권, 법률행위
대리권, 재산관리권의 상실선고
또는 실권회복선고의 심판에 대하
여는 상대방 또는 민법 제925조에
규정한 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
다.

하거나 이를 대행하고 있는 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청구하여야 한
다.

제103조(즉시항고) 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 친권의 상실, 일시
정지, 일시 정지에 대한 기간 연
장, 일부 제한 및 그 실권 회복의
선고 또는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의 상실 및 그 실권 회
복의 선고 심판에 대하여는 상대
방 또는 「민법」 제925조에 규정
한 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사법지원심의관실	
연락처	(02) 3480-1609